

의안번호	2216320
의 퇴 인	조인철의원
회 답 일	2026. 3. 5.
추 계 번 호	26B042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평가·진단, 컨설팅 및 보호대책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보안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업무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보안업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보안 관련 구성요소 명세서의 생성·관리 및 보안업무 4. 그 밖에 고도의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 필요한 보안업무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²⁾의 보안업무(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매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표 1]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현황: 2025년

(단위: 개사)

연도	지정신청 건수	신규 지정 건수	지정 취소 건수	누적 지정 건수 (2025년말 기준)
2025	9	2	1	2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대상을 현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업무 외에 ‘인공지능시스템의 보안업무,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보안 관련 구성요소 명세서의 생성·관리 및 보안업무 등’으로 확대할 경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 및 지정 건수가 증가하고 심사 범위 및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3. 그 밖에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표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025년

연도	구분	소요 비용	실시 기관
2025	지정심사	3,240만원(9개사 X 약 360만원*) *서류심사 200만원(자문비 40만원 X 5명), 현장실사 120만원(자문비 40만원 X 3명),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40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시비용 국가 지원(출연)
	사후관리 심사	9,720만원(27개사 X 약 360만원*) *서류심사 200만원(자문비 40만원 X 5명), 현장실사 120만원(자문비 40만원 X 3명),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4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의 보안업무,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보안 관련 구성요소 명세서의 생성·관리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등 관련 정보가 없으며, 지정심사에 통과하여 실제 지정되는 기업의 수 역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시스템의 보안업무,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보안 관련 구성요소 명세서의 생성·관리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